

의안 번호	377
----------	-----

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1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377호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2. 제안이유

-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,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송 콘텐츠의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관계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(개정 2014. 5. 28.)
- 나. 시청자미디어센터는 「방송법」 제90조의2제5항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, 본조 제7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(시청자미디어센터)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
- 다.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,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상호 체결한 “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” 제5조에서 센터 운영비의 20%는 성북구가 분담하기로 하였음
 - 운영비 분담비율 : 방송통신위원회 60%, 서울시 20%, 성북구 20%
- 라.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기능
 - 시청자 미디어교육·체험 및 홍보 지원
 - 시청자의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및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
 -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지원 및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「방송법」 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
- 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편성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-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(이하 “미디어센터” 한다)는 2015. 12. 15.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설립·운영되고 있는 시설임.

□ 출연근거

- 미디어센터에 대한 출연 근거는 「방송법」 제90조의2제7항 및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을 위한 업무협약」 제5조제3항제2호를 근거로 2017회계연도부터 의회 동의를 얻어 운영비의 20%를 분담하고 있음.

「방송법」 제90조의2제7항, 업무협약 제5조제3항제2호

- * 「방송법」 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- * 「업무협약」 제5조(운영비 분담)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.
 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분담한다.
 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출연금 현황 및 추이

- 2025년도 미디어센터의 출연금은 인건비 단가 상승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임차료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.67%인 780만원이 증가된 2억 9,990만원이 편성되었음.

〈2025년도 출연 예산안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' 25예산(안)	' 24예산	비교증감	증감률
총 계	299,900천원	292,100천원	(증)7,800천원	(증)2.67%
인건비	82,700천원	80,300천원	(증)2,400천원	(증)2.98%
경상비	217,200천원	211,800천원	(증)5,400천원	(증)2.54%

□ 종합의견

- 본 출연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, 「방송법」 및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을 위한 업무협약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.